_							
	검찰사건사무규칙	ㅣ별됬	제 1 56 궁 서 신 ㅣ	<개저	2021	a	2/15

○○○검찰청

수 신 : ○○○경찰서장

제 목:임시조치신청 기각(가정폭력)

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임시조치신청이 있는바,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임 시조치신청을 기각합니다.

[] 1	.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
[] 2	.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,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
[] 3	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
[] 4	.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
[] 5	.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
[] 6	.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

			성명		()	
			주민등록번호		(세)	
행	위	자	직업					
			주거					
변	호	인						
			성명		주거			
피	해	자	직장					
범죄시실 및 임시조치가 필 요 한 이 유			별지 임시조치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					
기 취 자	각 하 및 (는 이 유						
○○○ 검찰청								
				- 1	걸 사		@	